

9. 상속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상속이란 무엇인가?

* 상속 : [법률]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음. 또는 그렇게 하는 일.

2. 상속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상속시 분배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나?

4. 상속시 분배방식이 시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당대의 통념 또는 법제가 배경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1. 均分 관행

- 상속 관행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 孫抃이 (중략) 이어 경상도안찰부사에 임명되었다. 사람으로 동생이 누나와 더불어 서로 소송을 하는 자가 있었다. 동생이 말하기를 “원래 재산[産]은 함께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누나 혼자 부모의 재산[財]을 얻고 동생은 분깃이 없겠습니까” 하자, 누나가 가로되 “아버가 임종할 때 家産을 들어 나에게 주셨고 네가 얻은 것은 검은 옷과 검은 관, 짚신과 兩紙 1卷일 뿐이다. 文契가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어길 수 있겠느냐” 하였다. 소송을 한지 몇 년이 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 손변이 두 사람을 불러 앞에 오게 하고 물어 말하기를 “아버가 죽었을 때 어머니는 편안히 계셨는가” 하니, 말하기를 “먼저 죽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때 나이가 각각 얼마였는가” 하니, 말하기를 “누나는 이미 시집갔고 동생은 바야흐로 터벅머리 아이였습니다” 하였다. 손변이 인하여 깨우쳐 말하기를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고르니(均) 어찌 나이 들어 시집간 누나에게는 후하고 어머니도 없이 터벅머리 아이에게는 박하겠느냐? 돌아보니 아이가 의뢰할 바는 누나뿐인데, 만약 누나와 더불어 똑같이 재산을 남기면 그를 사랑함이 혹시 지극하지 않고 양육함이 오로지 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이다. 아이가 이미 장성하면 이 종이를 사용하여 狀을 써서 검은 衣冠을 입고 짚신을 신고 官에 고하면 장차 능히 분별해줄 자가 있을 것이라 하신 것이니, 단지 네 가지 물건만 남긴 뜻이 대개 이러한 것이다.” 하니, 동생과 누나가 듣고 감격하여 깨닫고 서로 울었다. 손변이 드디어 家産을 中分하여 그에게 주었다. (고려사 권102, 열전 15, 손변)

○ 李之氏는 風標가 英雅하고 마음가짐이 寬厚했으며 문장과 사업이 일시에 걸출했다. 다만 인색하여 아버가 죽자 弟妹와 財産을 나누지 않았고[不分] 그 家奴가 방자히 횡포를 부리고 혹 도둑질하고 위협함에 이르러도 단속하고 억제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 기용을 받았다. (고려사 권95, 열전, 이자연 부 이지저)

2. 奴婢相續

- 노비상속에 대해 살펴본다.

- 자녀 均分の 관행과 법제

○ 羅益禧는 어려서 武藝를 익혔고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성품이 지조가 있어 節義를 사모하였고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어머니가 일찍이 分財하면서 따로[別] 藏獲 40口를 남기니, 사양하며 말하기를, “1남이 5녀 사이에 거하니 어찌 차마 구차히 얻어 어머니의 인자하심에 몹을 끼치겠습니까?” 하니, 어머니가 의롭게 여기고 따랐다. (고려사 104, 열전, 羅裕 附 羅益禧)

○ 공양왕 4년에 都官이 상서했다. (중략) 一. 노비의 爭訟이 일어나는 것은 合執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컨대 지금부터 財主로서 노비를 나누지 않고[未分] 합하여 가진[合執] 자나 혹은 나누어 가졌으나[分執] 均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陳告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고려사 권85, 형법지 2, 訴訟, 공양왕 4년)

- 후사가 없는 사람의 노비

○ 인종 10년, 判, 후사가 없는[無後] 사람의 노비는 官에 속하게 한다. (고려사 권85, 형법지 2, 노비)

○ 공양왕 3년에 郎舍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중략) 祖業의 人口는 孫外에 서로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비록 후사가 없는[無後] 자라도 그 夫婦 가운데 同宗인 자를 길러[養] 서로 전하게 하고, 그 賣買한 사람이 절에 바치는 폐단을 禁하고 다스리기를 함께 행하시면 즉 어찌 성인의 다르심에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85, 형법지 2, 奴婢)

○ 공양왕 4년 人物推辨都監이 奴婢 決訟法을 정했다. (중략) 一. 同宗의 子 및 3세 전

에 遺棄한 小兒를 戶口에 付籍하여 收養한 자가 되었으므로 곧 자기 자식과 같이 傳給하는 것 외에는 지금부터 노비를 얻기 위해 收養한 자라고 冒稱하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子孫도 없고 收養한 자도 없으면 使孫이 官에 고하여 平分한다.” (고려사 권 85, 형법지 2, 奴婢)

○ 공양왕 4년에 都官이 상서하기를 “一. 子孫 없이 죽은 자는 그 남편이 처의 노비를 전부 얻고 그 아내가 守信하면 역시 남편의 노비를 전부 얻게 하되 다만 종신토록 허락하십시오. (살아남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뒤에는 각각 本孫에게 돌리되, 따로 文契가 있으면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중략)” 라고 했다. (고려사 권85, 형법지 2, 奴婢)

○ 자녀가 없는 자의 물건은 父母에게 還係되므로 그 同生, 三寸姪, 四寸孫이 本族이 된다. 四寸孫이 없는 이후에는 당연히 祖父母에게 上係되므로 三寸叔, 四寸兄弟가 本族이 된다.(경국대전주해, 형전, 私賤)

3. 土地相續

- 토지상속에 대해 살펴본다.

- 民田 상속의 사례

○ 충혜왕 후 4년에 작은 병에 걸리자 子女를 불러 앞에서 말하기를 “지금의 형제들이 서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아들 瓘에게 명하여 文契를 써서 家業을 均分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계하여 가로되 “화목하고 다투지 않는 것으로 너희의 자손을 교훈하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09, 열전, 윤선좌)

- 民田 상속의 법규

○睿宗 17년(1122) 判. 무릇 父祖田으로 文契가 없는 것은 適長을 우선하여 決給하라. (고려사 권85, 형법지 2, 訴訟)

○ 나누지 않은 奴婢는 子女의 存沒을 논하지 말고 分給한다. [본인이 죽고 子孫이 없는 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누는 수에 차지 않는 것은 嫡子女에게 均給하고 만약 남은 수가 있으면 承重子에게 먼저 주고, 또 남음이 있으면 長幼의 차례로 준다. 嫡이 자녀가 없으면 良妾子女, 良妾子女가 없으면 賤妾子女도 동일하다. 田地도 같다.

(경국대전 권5, 형전, 私賤)

- 田丁 상속/ 兩班田, 軍人田, 外役田

○ 靖宗 12년 判. 여러 田丁의 連立은 嫡子が 없으면 嫡孫, 적손이 없으면 同母弟, 동모제가 없으면 庶孫, 男孫이 없으면 女孫으로 한다. (고려사 권84, 형법지 1, 戶婚)

○ 오직 府兵은 나이가 만 20세에 처음으로 받고 60세에 돌려주었다. 子孫親戚이 있으면 田丁을 遞하고 없는 자는 監門衛에 籍하고 70세 이후에는 口分田을 지급하고 餘田은 거두었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1, 田制)

○ 문종 34년(1080) 3월 判, 죽기를 두려워하여 적에게 항복한 여러 軍將의 田은 親子에게 連立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親戚으로 役을 감당할만한 자를 택하여 주고 諸衛軍에 充補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 1, 田制, 田柴科)

- 田丁 상속/ 功蔭田 상속 규정

○ 顯宗 12년 10월, 判. 功蔭田은 直子が 犯罪했으면 그 孫에게 移給한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1, 田制, 功蔭田柴)

○ 문종 3년 5월에 兩班功蔭田柴法을 정했다. 一品은 門下侍郎平章事 이상으로 田 25結 柴 15結이며, 二品은 叅政 이상으로 田 22結, 柴 12결이며, 三品은 田 20결, 柴 10결이며, 四品은 田 17결, 柴 8결이고, 五品은 田 15결, 柴 5결이다. 子孫에게 傳하되 散官은 5결을 감한다. 樂工賤口로서 放良한 員吏는 모두 줄 수 없다. 功蔭田을 받은 자의 子孫이 社稷을 위태롭게 하거나 謀叛 大逆에 연좌되거나 公私罪를 雜犯하여 除名을 당한 외에는 비록 그 아들이 죄가 있어도 그 손자가 죄가 없으면 功蔭田柴의 3분의 1을 지급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 1, 田制, 功蔭田柴)

○ 문종 27년 정월, 判. 아들이 없는 사람의 功蔭田은 女壻, 親姪, 養子, 義子에게 傳給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 1, 田制, 功蔭田柴)

- 田丁 상속/ 功臣田 상속

○ 忠烈王 24년 정월에 忠宣王이 즉위하고 下敎하여 말하기를, ‘功臣之田은 子孫이 微劣하여 孫外人이 占取한 것은 연한을 논하지 말고 孫에게 還給하고, 同宗 중에 만약 一戶가 合執한 것은 그 足丁 半丁을 가려 均給하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1, 田制, 功蔭田柴)

- 孫外與他 금지 관념

○ 나의 증조인 貞景公 金士元의 遺書 내용에, '후에 자손들이 자식이 하나도 없다고 대의를 돌보지 않고 구차히 정욕을 좇아 螟蛉子를 길러 아들로 삼고 골육지친을 길거리 사람처럼 보아 祖業으로 서로 전하는 奴婢를 하루 아침에 가버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 利祿을 사모하여 노비를 권세있는 가문에게 뇌물로 주는 자가 만약 혹 있으면 孝順한 子孫들이 관에 狀告하여 노비를 빼앗고 屬籍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라'고 하신 유사이므로, 자손된 자는 不可不 따라야 하겠기에 권말에 竝書하여 후손에게 보이는 것이니, 무릇 나의 자손 중에 행여 자식 없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마음에 새겨 祖宗의 遺訓을 잃지 않으면 큰 다행이겠다. (金務奴婢都許與文記, 세종 11년, 1429)

○ 嘉靖 31년(1552, 명종 7) 정월 17일 임하택에게 문서를 만들어 주는 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垆田 및 기와집 15칸을 다른 곳에 放賣하셨는데, 孫外로 방매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기에 同 垆田과 기와집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妻邊으로 전래한 北洞 들판에 있는 논 5마지기, 반 1마지기를 나의 妻의 同議를 받아 값으로 목면 5동을 쳐서 正租 12석 8두를 숫자대로 받고 영영 방매하되 후일에 다른 일이 있거든 이 문서에 따라 관에 고하여 가릴 일이다. 畚主 私奴 권석수, 私婢 ○伊, 筆執 학생 권응조 (권석수垆田瓦家매매문기)

- 相續 시기

○ 祖父母와 父母가 있는데, 子孫이 籍을 따로 하고 재산을 달리하면서 공양을 하지 않으면 徒 2년이고, 服 중에 籍을 따로 하면 徒 1년이다. (고려사 84, 형법지 1, 戶婚)

- 상속과 居住

○ 龜洞에는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세차게 흐르는 물이 있으니 바로 龍溪이다. 계류 양쪽 기슭에 田 2頃이 있는데, 이는 동안거사의 外家에서 물려받은 柴地로 척박하나 몇 명의 가족이 의뢰할 수 있다. 이에 계류 서쪽 田의 좁은 평지 위에 초가를 지었다. (동안거사집, 잡저, 보광정기)